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9호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 함.(안 제3조)
- 나.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안 제7조)
- 바.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8조)
- 사. 시장은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시장 및 구청장은 자살 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족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11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2.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3.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시장, 보건복지담당국장,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인
3.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소방안전본부장이 추천한 각 1인
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및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장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및 군·구·산하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자살 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족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정책)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1조(자살실태조사)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2. 3.31] [법률 제10516호, 2011. 3.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